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3.25. 선고, 2018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된 자녀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6·25전몰군경자녀는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 ~ 12. 12.)

3) 행정규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중 “보상금 수급자나”를 “보상금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수급자나”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상금을 지급받고”를 “보상금등을 지급받고”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보상금”을 각각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보상금을 지급받고”를 “보상금등을 지급받고”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보상금”을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보상금 수급자나”를 “보상금등 수급자나”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을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상금을”을 “보상금등

을”로, “보상금 등”을 “보상금등”으로,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한다.

제8조의6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보상금등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협이자	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2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3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4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5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본인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위의 사람을 보상금등 수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협이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보상금 등 수급자 지정 방법	1.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순위는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2.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독립유공자 유족 1)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자녀 3) 손자녀(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며,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1)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2)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나. 국가유공자 유족 1)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25세 미만 자녀(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25세 미만 자녀의 예에 따름)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다. 보상금등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①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 ②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③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등을 지급함 - 다만, 보상금등을 받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모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위 ①, ②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②, ③순위에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함 3. 제2호다목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등 수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등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한다.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다. 다.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및 협의자의 날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

처리절차

이 지정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서 작성



접수



기록 정리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지급구분	[] 계좌입금	금융기관명	
	[] 압류방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 입금	계좌번호	
	[] 위탁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제1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담당공무원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수수료
확인사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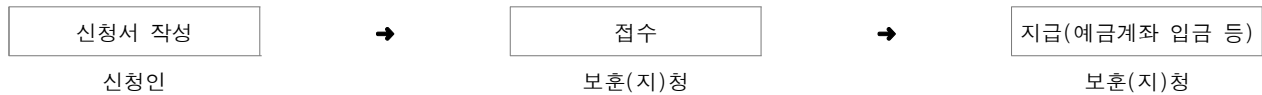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마.·바. (생략)

② (생략)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 (생략)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몰균경자녀수당(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수급자
나 -----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

마.·바.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

 -----.

1. 보상금등을 지급받고 -----

 -----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

2. (현행과 같음)

3. -----
 ----- 보상금등 -----

4. -----
 -- 보상금등 -----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보상금을 지급받고</u>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u>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u> :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9. <u>보상금등을 지급받고</u> ----- ----- ----- <u>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u> ----- -----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 인하여 <u>보상금</u>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11. ----- <u>보상금등</u> ----- ----- ----- ----- ----- -----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12. -----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③ (생략)

제8조의6(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영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 보상금등 수급자나 -----

-----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6(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 ① -----
----- 보상금등을 -----

----- 보상금등 -----
----- 신청서를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